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. 12. 9.

속초시장



○ 도로명주소 : 속초시 번영로67번길 9-10 외 2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별 지 참 조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(☎033-639-2726,2041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1.12.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단,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한 경우 가능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